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「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」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
- 현행 :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
- 변경 : 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

나.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2조 ~ 제10조)

다. 가로수의 조성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〔2017. 10. 16. ~ 11. 6〕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
마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「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」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제명을 『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』에서 『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』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가로수 조성협의 및 승인사항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가로수를 식재에서부터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